

제229호

고양시보

2026년 8월 11일 (화)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3016호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3017호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5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232호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1
고양시 규칙 제1233호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15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6-226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20
-------------------	---------------	----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6-1842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일산동 21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재공고	21
--------------------	--	----

제3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인

2026년 8월 11일

고양시 조례 제3016호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사업자등록증에”를 “사업자등록증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고양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계약체결시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을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 [별지 제2호서식] 의 건설노동자 임금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계약서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임금지불서약서”를 “근로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표준계약”을 “계약”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회계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회계과장 김 경 찬
	팀 장 성 명	계약1팀장 방 진 규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황 지 은 (031-8075-2514)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중복된 조문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함(제2조제4호 및 제7호).
- 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과 관련한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함(제6조제4항).
- 다. 상위법령 용어에 맞춰 ‘임금지불서약서’를 ‘근로계약’으로 변경함(제9조제1항제1호).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3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인

2026년 8월 11일

고양시 조례 제3017호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활동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

다.

2. “평화의 소녀상 등”이란 고양시 관내 공공용지 또는 고양시가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상징하는 조형물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존·보호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상징물의 역사적·예술적·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 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조형물 지정 등) 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을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보호 및 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훼손 방지 및 조치) ① 누구든지 평화의 소녀상 등을 훼손하거나 오욕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훼손·오류 사건의 경위 및 조치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안자: 최성원·문재호·신인선 의원(찬성의원: 공소자 의원 등 7명)

□ 제안이유

- 전국 각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은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상징물로서 중요한 역사적·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활동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내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 및 관리하여 고양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상징물의
역사적·예술적·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 마. 평화의 소녀상 등의 공공조형물 지정 및 보호, 관리, 훼손
방지 및 조치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인

2026년 8월 11일

고양시 규칙 제1232호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을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지한”을 “가진”으로 한다.

제3조제3항 후단 중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빈도수가 동일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지정할”을 “추첨하게 할”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셋째자리에서”를 “다섯째 자리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회계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회계과장 김 경 찬
	팀 장 성 명	계약1팀장 방 진 규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방 진 규 (031-8075-2510)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누락됐거나 문언을 달리하는 조항을 개정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다른 시·도 위원 구성 비율(구성인원의 20% 이상)을 추가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
 - 평균점수 산출기준를 세밀화(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하여 동점자 발생을 방지함.
- 제안서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하도록 한 예비 평가위원 비율을 구성인원의 50%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의(開議) 요건(7명 이상 출석)이 안정적으로 충족되도록 함.
- 예비 평가위원을 입찰참여자가 추천하도록 하여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함.

□ 주요내용

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다른 시·도 위원 구성 비율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함(제3조제3항).

나. 제안평가위원회의 예비 평가위원 비율을 50퍼센트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여자가 추천하도록 함(제3조제4항).

다. 제안서평가점수 산출 결과, 평균점수 소수점자리를 다섯째
자리로 변경함(제6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민 경 선 인

2026년 8월 11일

고양시 규칙 제1233호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한”을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25조에 따라”로, “측량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측량대행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업자”를 “측량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사항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임대하고”를 “사무실을 임차하고”로, “임대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 중 “제5조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제5조에 따른”으로, “대행업자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을”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해당하는

자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업자가”를 “시장은 대행업자가”로, “1”을 “어느 하나”로, “정지시킨다”를 “정지시킬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징수할”을 “징수하는”으로, “수수료는”을 “측량수수료는”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시개발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도시개발과장 김 교 철
	팀 장 성 명	도시개발팀장 김 수 남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서 은 영 (031-8075-3163)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인용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춰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불명확한 ‘측량대행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보완하고, 측량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함(제3조제1호).
- 나. 「건설업체진단규정」의 폐지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에 맞춰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함(제5조).
- 다. 측량대행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제8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 라. 측량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2조).

고양시 고시 제2026-226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좌5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고 양 시 장

1. 사 업 명

- 「가좌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3. 사업지구 현황

지 구 명	사 업 위 치	필지수	면적(㎡)	비 고
가좌5지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5-1번지 일원	246	145,098	일산서구

4. 토지조서 : 별도첨부

5. 기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도면 등 서류는 지적소관청(각 구청)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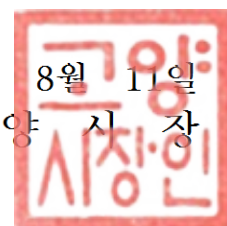
☎ 일산서구청: 031-8075-7197

고양시 공고 제2026-1842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일산동 21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재공고

1. 고양 도시관리계획(일산동 21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1일
고양시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일산동 655-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서구 일산동 655-8번지 일원	18,686.8	고양시 고시 제2017-205호 (2017. 6. 21.)	-
변경	일산동 21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서구 일산동 2148번지 일원	18,686.8	고양시 고시 제2017-205호 (2017. 6. 2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 내용	변경 사유
변경	· 구역명 변경 - 기정: 일산동 655-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일산동 214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변경 - 기정: 일산동 655-8번지 일원 - 변경: 일산동 2148번지 일원	· 지번 변경에 따른 구역명 및 위치 변경 (구역계 변경없음)

2)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	-	-	1	일산서구 일산동 655-8번지	12,491	복합시설용지
변경	-	-	-	1	일산서구 일산동 2148번지	12,491	복합시설용지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허용	630% 이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관련 별표24 적용
	상한	전 체	① + ② = 754.46%	∴ 754.46%
		기부채납①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2절 3-2-2 용적률 관련 내용 적용 •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x [1+1.5x가중치×α] = 630 × (1+1.5×0.706×0.1110) = 704.06% • 가중치 : 0.706 • α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1,386.6 / 12,491 = 0.1110	※ 구역면적 : 18,686.8㎡ 대지면적 : 12,491㎡ ①용도폐지 국공유지(대지내) : 1,690㎡ ②공공시설 총설치면적 : 6,195.8㎡(구역면적-대지면적) ③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119.2㎡ ④공공시설 기부채납면적 : 3,076.6㎡(②-③) ⑤기부채납 순부담 면적 : ④ - ① = 1,386.6㎡(7.42%) ∴ 704.06%
		가중치	• 공공시설등의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평균용적률 = [(630%×745.4㎡)+(230%×641.2㎡)] / 1,386.6㎡ = 445.05% 가중치= 445.05% / 630% = 0.706	가중치= 0.706
		녹색건축물 완화②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장15조 및 동법 시행령11조 기준 적용 • 630% x 8% = 50.4%	∴ 50.4%
층수/높이	최고층수 49층이하 / 최고높이 150m이하		—	
건축한계선		• 대상지 동측, 서측, 남측, 북측 도로변 3m 지정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단, 실내낚시터,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은 지상2층 이하 허용		—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허용	630% 이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관련 별표24 적용
	상한	전 체	① + ② = 754.46%	∴ 754.46%
		기부채납①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2절 3-2-2 용적률 관련 내용 적용 •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x [1+1.5x가중치×α] = 630 × (1+1.5×0.706×0.1110) = 704.06% • 가중치 : 0.706 • α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1,386.6 / 12,491 = 0.1110	※ 구역면적 : 18,686.8㎡ 대지면적 : 12,491㎡ ①용도폐지 국공유지(대지내) : 1,690㎡ ②공공시설 총설치면적 : 6,195.8㎡(구역면적-대지면적) ③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119.2㎡ ④공공시설 기부채납면적 : 3,076.6㎡(②-③) ⑤기부채납 순부담 면적 : ④ - ① = 1,386.6㎡(7.42%) ∴ 704.06%
		가중치	• 공공시설등의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평균용적률 = [(630%×745.4㎡)+(230%×641.2㎡)] / 1,386.6㎡ = 445.05% 가중치= 445.05% / 630% = 0.706	가중치= 0.706
		녹색건축물 완화②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장15조 및 동법 시행령11조 기준 적용 • 630% x 8% = 50.4%	∴ 50.4%
층수/높이		최고층수 49층이하 / 최고높이 150m이하		—
건축한계선		• 대상지 동측, 서측, 남측, 북측 도로변 3m 지정		

다. 건축물의 건축선 및 형태·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대지내 공지 및 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기타사항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8. 11.(화) ~ 2026. 8. 25.(화) (※공고일부터 15일간)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일산서구청 건축과,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
- 관련 도서: “계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 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장소에서 공람 내용의 복사 및 사진촬영 등을 금지합니다.